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2,559,818	7,576,795
일반회계	232,121,633	6,963,649
특별회계	20,438,185	613,146
기타특별회계	20,438,185	613,1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3,595	20,508
주택사업특별회계	517,306	15,51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227,880	36,8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4,700	19,34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23,600	30,708
주차장특별회계	352,556	10,577
수질개선특별회계	15,466,548	463,9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22,000	6,6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29,94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